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32
------------	------

제출일자 : 2017.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의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누락된 이용료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과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4조(운영) 제2항 일부 개정

- 위탁기간 “5년 이내”를 “5년”으로 개정

나. 제6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1항 별표1 개정

- 사물함 이용료, 회원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규정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지방자치법」 제1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참조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 7. 20. ~ 2017. 8. 9.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 계약으로 체 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u>5년 이내로</u> 한 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 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 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 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5년으로 - --. ----- ----- ----- -----. -----.</p>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납부기준	이용료·수수료(원)		비 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일 반	
식 당	1회	무료	1,300	
사물함	1월	1,000		
회원증 신규발급	1회	무료	2,000	관련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에 한해 50% 감면
회원증 재발급	1회	5,000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 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